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홍난이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,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추가 신설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국가수호와 국익을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, 각 지자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하고자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등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행 조례상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,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 도모와 함께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기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,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령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직 도내에는 시행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.